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법 · 국회사무처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설치〉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451호~제2203454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제안경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9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II. 검토의견	13
1. 총 관	13
가. 제안 배경 및 취지	13
나. 제정안등의 체계 및 주요내용	17
2. 제정안등의 조문별 검토	20
가. 목적 및 정의 등	20
나. 군인권보호관의 설치 · 지위 및 업무	24
다. 군인권보호관의 임기 ·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30
라.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	34
마. 조사 대상, 부대 방문조사 및 진정의 각하 등	36
바. 이송, 협조, 조사의 방법 및 질문 · 검사권 등	42

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 진정의 기각, 구제조치 권고, 고발·징계 권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46
아.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50
자. 긴급구제 조치 권고, 법원 등 의견제출, 조사의 비공개, 처리 결과 공개 및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등	52
차. 보 칙	55
카. 별 칙	57
타. 부 칙	62

I. 제안경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 · 황정아 · 염태영 · 김남희 · 부승찬
안태준 · 이병진 · 김준혁 · 오세희 · 박용갑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의안번호 : 3451

나. 제안이유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으나,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해 온 구타 · 폭언 · 가혹행위 · 집단 따돌림 등 반 인권적인 병영 부조리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는 2015년 12월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군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대통령의 통수를 받는 군을 조사·감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국군이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감독기관을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임명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문제 감시에 힘쓰기는커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사건을 모두 자의적으로 기각하는 등 군 인권침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기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한편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로서 군인의 인권 보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

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군인등”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과 같은 법이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이 포함됨(안 제2조제1호).

다.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5조).

라.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 권고, 실태조사,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바. 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등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요건에 따라 각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7조).

카. 군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

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
검사권을 가짐(안 제18조 및 제19조).

타.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기각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함(안 제21조).

파.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등
에게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
요한 구제조치와 각종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
며,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군인권보호관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
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6조).

거. 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하되, 군인권보호관
은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
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너.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
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더. 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
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
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
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함(안 제41조).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454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1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 · 황정아 · 염태영 · 김남희 · 부승찬
안태준 · 이병진 · 김준혁 · 오세희 · 박용갑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의안번호 : 345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

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 · 황정아 · 염태영 · 김남희 · 부승찬
안태준 · 이병진 · 김준혁 · 오세희 · 박용갑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의안번호 : 345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

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 · 황정아 · 염태영 · 김남희 · 부승찬
안태준 · 이병진 · 김준혁 · 오세희 · 박용갑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의안번호 : 345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제4장의2 삭제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총괄

가. 제안 배경 및 취지

제19대국회는 군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2014년 10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정책개선과제를 결정하였으며,¹⁾ 이러한 정책개선과제를 정부가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2015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음.

2015년 12월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전문상담관,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 근거²⁾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제20대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개정

1)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5, p.42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안, 국회에 설치하는 개정안, 국방부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후 제21대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개정안과 국회에 설치하는 개정안³⁾이 각각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해당 법률은 2022년 7월 1일 시행되어 현재 시행 후 2년 정도 경과하였음.

[표-1] 군인권보호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조 직	군인권보호관(§50의2)	○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 ○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군인권보호위원회(§50의3)	○ 군인권 침해예방 등 수행하는 소위원회
	지원조직(§16①)	○ 군인권보호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설치 ⁴⁾
권 한	군부대 방문조사(§50의4)	○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권 보장 수단(§50의5)	○ 국방부장관은 인터넷 등 진정 수단 제공
	사망사건 수사 입회(§50의6)	○ 사망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 입회 요구
	진정 각하 특례(§50의7)	○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 각하 특례 규정
	조사 방법 특례(§50의8)	○ 군인권침해 관련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피해자 보호조치(§50의9)	○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3) 제21대국회에서 안규백의원 대표발의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4) 군인권보호국(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3개 과단위 조직으로 구성)에서 지원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현행법에 대하여, 현재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측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⁵⁾ 국군이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과 이와 연계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정안등”이라 함)은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①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아직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군인권보호관의 소속 변경과 같은 개편은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이 필요한 점, ③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설치에 관한 제21대국회 논의 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신중한 의견⁶⁾을 제

5) 군인권보호관의 임명방식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측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에서 군의 인권문제를 바라볼 개연성이 높게 존재한다. 물론 정권교체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일시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군의 인권문제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이승택, 「군인의 인권과 군인권보호관제도」, 법학연구 제24권제1호(2024. 3.), p.114).

시한 점과 ④ 국회 심사 연혁, 국회의 기능 및 업무영역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6) 당시 기획재정부는 ① 군인 인권침해 조사, 고발 등 행정·사법적인 역할 수행은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행정부의 관련 기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현재 군인 기본권 보장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방부 인권담당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기구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③ 필요 시 국회는 국정에 대한 조사·감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군인권 보장업무에 대한 적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제정안등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본칙 총 6장, 총 41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인권보호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일부 특수한 내용을 제외 하고는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조사·구제 등에 관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 및 체계를 따르고 있음.

제정안과 연계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소속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 근거 및 임면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관계에 관한 부수적 사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권보호관의 국회로의 소속 변경에 맞추어 2022년 7월 시행된 군인권보호관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있음.

[표-2] 제정안등의 체계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1장(총칙)에서는 적용대상 ‘군인등’,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군인기본권침해’에 관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음.

둘째, 제2장(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임용 등)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중립성, 수행 업무, 임기,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셋째, 제3장(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임용, 지원 조직, 보고서 작성·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넷째, 제4장(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에서는 조사 대상, 부대 방문조사, 진정의 각하, 수사기관과 군인권보호관의 협조, 조사의 방법, 질문·검사권,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회, 진정의 기각, 구제조치 등의 권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섯째, 제5장(보칙)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 공무원 등의 파견, 불이익 금지와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여섯째, 제6장(벌칙)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죄,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죄, 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3] 제정안의 조문체계

장	조문	주요 내용	인권위법 관련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제2조제6호·제7호
	제3조	국가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군인권보호 관의 설치와 임용 등	제5조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
	제6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등	제19조·제26조
	제7조	군인권보호관의 임기 등	-
	제8조	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	제9조
	제9조	군인권보호관의 신분보장	제8조
제3장 군인권보호 관의 조직 등	제10조	공무원의 임용	-
	제11조	지원조직	제16조
	제12조	보고서 작성 등	제29조
제4장 군인기본권 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13조	조사 대상	제30조
	제14조	부대 방문조사	제50조의4
	제15조	진정의 각하 등	제32조·제50조의7
	제16조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제33조
	제17조	수사기관과 군인권보호관의 협조	제34조
	제18조	조사의 방법	제36조·제50조의8
	제19조	질문·검사권	제37조
	제20조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제50조의6
	제21조	진정의 기각	제39조
	제22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25조·제42조·제44조
	제23조	고발 및 징계 권고	제45조
	제24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6조
	제25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
	제26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제48조·제50조의9
	제27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제28조
	제28조	조사의 비공개	제49조
	제29조	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50조
	제30조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제50조의5
제5장 보칙	제31조	자격 사칭의 금지	제51조
	제3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52조
	제33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3조
	제3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54조
	제3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55조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제6장 벌칙	제37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	제56조
	제3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	-
	제39조	자격 사칭	제58조
	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제59조
	제41조	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	제60조·제63조
부칙	-	시행일	-

2. 제정안등의 조문별 검토

제정안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조사·구제 등에 관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 및 체계를 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검토보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설치에 관한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조문 부분에서 함께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된 제정안의 조문과 비교·제시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안 제1조는 해당 법률의 목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제2조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군인등’·‘기본권’·‘군인기본권침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군인기본권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진정·조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4] ‘목적 및 정의 등’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2. “기본권”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장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을 말한다. 3. “군인기본권침해”란 군인등의 기본권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 침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등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등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하 “군인기본권보호”라 한다)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조사 등 군인기본권보호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 제2조제1호의 ‘군인등’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6호의 ‘군인등’과 동일하나, 제정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기본권’ 및 ‘군인기본권침해’의 경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7호의 ‘군인권침해’보다 범위가 넓어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짐.⁷⁾

즉,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기관·사인 등으로부터 군인 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사인은 차별행위만 해당)가 ‘군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반면,

개정안은 문언상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권리 침해가 ‘군인기본권침해’에 해당하여 차이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침해와 달리 군인기본권침해의 침해행위 주체가 불분명하여 국가기관 등에 의한 침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사인 등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되는지가 모호한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제17조(의료권의 보장),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5] ‘군인기본권침해’ 및 ‘군인권침해’의 범위 비교

구 분	제정안의 ‘군인기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침해
정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 침해 (명령복종 의무, 집단행동금지 등 군인의 의무에 따라 제한되는 권리 제외)	○ 국가기관 등에 의한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 사인 등에 의한 차별행위
헌법 상 권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다만, 군인은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며(제29조), 비상계엄하에서는 단심재판이 가능(제110조)하고, 법률에 따라 단체행동권 등 군인 의무수행을 위한 기본권 일부가 제한됨.	

나.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지위 및 업무(안 제5조 및 제6조)

제정안 제5조는 ① 군인권보호관 국회 설치 근거 및 독립성·중립성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② 군인권보호관의 사무통할권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로서 군인기본권침해 관련 진정 및 직권에 의한 조사·구제,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조사·구제,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정책의 총괄·종합·조정,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6] ‘군인권보호관 설치·지위 및 업무’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5조(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①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③ 군인권보호관은 그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군인권보호관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 및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등) ① 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2. 군인등의 기본권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군인기본권침해 및 군인등의 기본권

제 정 안

-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제
3. 군인권보호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군인기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총괄, 종합 및 조정
 5. 군인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이행 실태의 확인 및 평가
 6. 군인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7. 군인들의 기본권 상황에 관한 정기·불시 실태조사
 8.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10. 그 밖에 군인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군인권보호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청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회 상임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한편, 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군인권보호관 1명을 국회에 두도록 하면서 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은 그 소관 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는 사무총장 권한의 위임대상에 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고 있음.

[표-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 바. (생략) <u><신설></u> <u>사.·아.</u> (생략) 2. ~ 16. (생략)	제22조의5(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군인권보호관 1명과 그 소속으로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군인권보호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아.·자.</u>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2. ~ 16. (현행과 같음)

[표-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 <u>국회예산정책처장</u> 또는 <u>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 ----- ----- ----- ----- ----- ----- <u>국회예산정책처장</u> , <u>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u> 또는 <u>군인권보호관</u>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⁸⁾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율하면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제1항은 「국회법」에 국회 소속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제정안 제5조제1항은 이를 다시 확인하는 규정을 두면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인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조사·구제 등의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회로 그 소속을 변경하면서 소관 업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율하려는 취지임.

또한, 제정안 제5조제3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사무통할권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제2항·제4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수 및 소속 공무원과 다른 법률로의 위임,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명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에 따른 사무총장 권한의 위임대상에 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는 규정은 국회사무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⁹⁾

다만,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6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은 군인등의 기본권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가 조사를 요청한 경우 군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요청한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¹⁰⁾고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로 정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에까지 국회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조사 요청 및

9)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처장)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참고로, 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 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군인권보호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석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¹¹⁾

또한,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수행 업무 중 군인등의 기본권 상황에 관한 정기·‘불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군부대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사전 통지 없는 불시 실태조사는 군사비밀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허가 없이 군사기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임.

11) 제정안 제12조제1항은 군인권보호관이 해마다 종합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 제6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군인권보호관의 임기·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안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제정안 제7조는 군인권보호관의 임기(2년, 연임 가능) 및 직급(차관급 정무직)을 규정하고, 제8조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며, 제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군인권보호관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표-9] ‘군인권보호관의 임기·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7조(군인권보호관의 임기 등) ①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8조(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 3. 군인권보호관 임명일 전 3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정당의 당원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군인권보호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

제 정 안
다. 제9조(군인권보호관의 신분보장) 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제3항은 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5(군인권보호관) ③ 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제정안 제7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직급(차관급 정무직) 등은 국회 소속기관인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유사하고,¹²⁾ 제정안 제8조·제9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관련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의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내용과 유사함.¹³⁾

12) 「국회도서관법」 제4조(관장) ②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다만, 군인권보호관의 임면 절차 및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제3항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군인권보호관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7조제2항은 군인권보호관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고 있음.

국회 소속기관장의 경우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직급에 부합하는 임면절차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 제7조는 군인권보호관을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정안 제8조제2호는 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로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항 간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 제9조는 군인권보호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하지 앓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제3항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임명’뿐만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넷째, 제정안 제9조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군인권보호관의 임면(임명과 면직) 승인을 결정하는 기관(본회의)과 군인권보호관의 퇴직을 결정하는 기관(국회운영위원회)이 서로 달라지게 되므로, 조문 정비가 필요함.

라.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정안 제10조는 군인권보호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제11조는 군인권보호관 업무 지원조직의 근거를 명시하며, 제12조는 군인권 관련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11]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10조(공무원의 임용) 군인권보호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조직) ①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②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고서 작성 등) ① 군인권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 내용, 군인기본권침해 방지와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 ¹⁴⁾ 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위원회’를 ‘군인권보호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10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국회 소속기관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고,¹⁵⁾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지원조직 및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 및 공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 및 제29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공개 내용과 유사함.¹⁶⁾

15) 「국회사무처법」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조사 대상, 부대 방문조사 및 진정의 각하 등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정안 제13조는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4조는 부대 방문조사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15조는 진정의 각하 요건, 관계 기관 이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12] ‘조사 대상, 부대 방문조사 및 진정의 각하 등’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13조(조사 대상) 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군인등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피해자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부대 방문조사) ①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

제 정 안

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없이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방문조사하고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진정의 각하 등) ① 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군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군형법」 제4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진정이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정 안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군인권보호관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군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군인권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3조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내용과 유사함.

다만, 군인등의 진정의무에 관한 제정안 제13조제2항과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 대한 비밀보장에 관한 제정안 제13조제3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적 제재 또는 성폭력

행위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¹⁷⁾

한편, 직권조사에 관한 제정안 제13조제4항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¹⁸⁾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권조사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무화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부대 방문조사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4조는 군부대 방문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의 내용과 유사함.

다만,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3항¹⁹⁾에 규정된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국방부장관의 방문조사 중단 요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⁰⁾

또한, 제정안 제14조제2항은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없이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방문조사하고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방문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²¹⁾

셋째, 진정의 각하 요건, 관계 기관 이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4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의 내용과 유사함.

다만, 제정안은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²²⁾을 반영하고 있지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20)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 수행 중인 경우 등 조사 대상자나 해당 부대에 대한 실제 조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는 국방부장관이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이 중단 요구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1)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부대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사전 통지 없는 불시 방문조사는 군사비밀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허가 없이 군사기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 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않으므로, 이를 제정안에 반영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각하하지 않고 진정을 조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 중인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제정안은 그 죄에 더하여 「군형법」 제4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도 규정하고 있으므로,²³⁾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군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추가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3)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군형법」 제9장(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바. 이송, 협조, 조사의 방법 및 질문·검사권 등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정안 제16조는 진정의 다른 국가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는 수사기관과 군인권보호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18조는 진정의 조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는 군인권보호관의 질문·검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13] ‘이송, 협조, 조사의 방법 및 질문·검사권 등’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16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군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인권보호관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사기관과 군인권보호관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군인권보호관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군인권보호관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부대·기관 등의 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질문·검사권)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제 정 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검사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진정의 다른 국가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6조, 수사기관과 군인권보호관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7조, 군인권보호관의 질문·검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9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와 유사함.

둘째, 진정의 조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8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와 유사함.

다만, 제정안은 군인권침해 관련 조사 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8²⁴⁾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7항²⁵⁾은 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와 ②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의 거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 제18조제7항은 예외 없이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0조의8의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규정의 반영 여부와 함께 국가기밀 사항 및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군인권보호관에게 소명하고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⁶⁾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6)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명백히 위험이 초래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행사가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준)사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기밀 사항이거나 범죄 수사 및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 진정의 기각, 구제조치 권고, 고발
· 징계 권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안 제20조부터 제
24조까지)

제정안 제20조는 군인등 사망사건의 통보 및 조사·수사 입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1조는 진정의 기각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22조는 구제조치의 권고 및 권고사항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3조는 진정 조사 결과 고발 및 징계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24조는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14] ‘사망사건 수사 입회, 진정의 기각, 구제조치 권고, 고발·징계 권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20조(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진정의 기각)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정 안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그 소속 부대·기관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군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군인권보호관에게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이 권고한 내용과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고발 및 징계 권고)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②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이나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장관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 정 안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군인권보호관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인권보호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인등 사망사건의 통보 및 조사·수사 입회에 관한 제정안 제20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과 유사하고, 진정의 기각에 관한 제정안 제21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와 유사하며, 구제조치의 권고 및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제정안 제22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42조 및 제44조와 유사하고, 진정 조사 결과 고발 및 징계 권고에 관한 제정안 제23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와 유사하며,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제정안 제24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와 유사함.

다만, 제정안 제20조제2항은 군인권보호관의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회요구에 군 수사기관의 장 등이 예외 없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2항²⁷⁾은 조사·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입회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⁸⁾

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28)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수사의 중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진행 중인 조사·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입회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안 제25조)

제정안 제25조는 군인권보호관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검사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등군사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5]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25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한 군인권보호관이 군검사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나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군사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임.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²⁹⁾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³⁰⁾로 한정하고 있음. 반면,

29)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30)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법원법」 제301조³¹⁾는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유형과 관계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혐의 관련 고발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³²⁾에 따라 재정신청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군사법원법」은 이미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신청 특례의 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1) 「군사법원법」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긴급구제 조치 권고, 법원 등 의견제출, 조사의 비공개,
처리 결과 공개 및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등 (안 제26
조부터 제30조까지)

제정안 제26조는 진정인·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7조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인권보호관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28조는 진정에 대한 조사의 비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9조는 진정 조사의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0조는 군인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16] ‘긴급구제 조치 권고, 법원 등 의견제출, 조사의 비공개, 처리 결과
공개 및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등’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26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군인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2. 부대·기관이나 장소 또는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정 또는 다른 부대·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등의 군 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5.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

제 정 안

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정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국방부장관등에게 그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27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군인권보호관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군인권보호관은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인터넷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인권보호관의 의견제출에 관한 제정안 제27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와 유사하고, 진정에 대한 조사의 비공개에 관한 제정안 제28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9조와 유사하며, 진정 조사의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제정안 제29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와 유사하고,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의 제공에 관한 제정안 제30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와 유사함.

다만, 진정인·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6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내용과 유사하나,

제정안은 군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9³³⁾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임.

3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차. 보칙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정안 제31조는 자격 사칭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2조는 군인권보호관 등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3조는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4조는 공무원 등의 군인권보호관 파견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5조는 진정·진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6조는 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17] ‘보칙’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3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비밀 유지의 의무) 군인권보호관, 그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나 제34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직원 또는 파견되었던 사람 등이 법에 따라 군인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자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군인권보호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군인권보호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인권보호관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격 사칭 금지에 관한 제정안 제31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1조와 유사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제정안 제32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와 유사하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에 관한 제정안 제33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와 유사하고, 공무원 등의 군인권보호관 파견에 관한 제정안 제34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와 유사하며, 진정·진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와 지원에 관한 제정안 제35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와 유사하고, 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제정안 제36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2조와 유사함.

카. 벌칙 (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정안 제37조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죄를, 제38조는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죄를, 제39조는 자격 사칭죄를, 제40조는 비밀 유지의 위반죄를, 제41조는 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표-18] ‘벌칙’ 관련 규정

제 정 안
제37조(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제13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기본권 침해 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자격 사칭) 제31조를 위반하여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제 정 안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2항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죄에 관한 제정안 제37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³⁴⁾와 유사하나, 제정안 제3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 반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정안의 벌금형의 상한이 현행법보다 높음.³⁵⁾

제정안 제37조제1항제1호는 ‘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

3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액인 5천만원 이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임.

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형법」 제136조제1항은 구성요건으로 '업무 수행' 및 '직무 수행'을 명시³⁶⁾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구성요건에 '업무 수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죄에 관한 제정안 제38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³⁷⁾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38조는 '진정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13조제3항³⁸⁾에서는 '진정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공개도 구성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격 사칭죄에 관한 제정안 제39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3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제정안 제13조(조사 대상)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진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피해자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8조³⁹⁾와 유사하나, 제정안 제39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 반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8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정안의 벌금형 상한이 현행법보다 높음.

제정안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액인 2천만원 이하를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임.

넷째, 비밀 유지의 위반죄에 관한 제정안 제40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9조⁴⁰⁾와 유사하나, 제정안 제40조는 법정형의 종류에 자격정지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반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9조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법정형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비밀 유지 의무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제정안의 법정형의 종류에 자격정지형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다섯째, 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죄에 관한 제정안 제41조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및 제63조⁴¹⁾와 유사함.

3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다만, 제정안의 벌칙 및 법정형과 관련하여, ① 제정안 제4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⁴²⁾에 해당하고, ② 제정안 제41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⁴²⁾인 데 반하여 같은 죄에 해당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③ 제정안 제41조제5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규정의 형벌 규정으로의 전환 여부, 벌금형의 수준, 벌칙 신설 여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2)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액인 5천만원 이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임.

타. 부 칙

제정안등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그 중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에서만 ‘소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법 시행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속 중인 군인기본권침해 관련 사건은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 국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음.

[표-19] 부칙

제정안등	부칙 내용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시행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속 중인 군인기본권 침해 관련 사건은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 국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이송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 관련 인권옹호 업무방해죄가 삭제되고, 제63조제1항제1항에 따라 군부대 방문조사 관련 과태료도 삭제되는데,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아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

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⁴³⁾

문 의 처

02)6788-5017

43)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침해 행위 관련 다수의 조문이 「국회군인권보호관법」으로 이관되고 「국회군인권보호관법」에 벌칙이 다수 신설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개정조문은 2개에 불과함. 개정사항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벌칙·과태료 위반행위의 규율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도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